

## 예천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예천군 임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9. 9

예천군의회 의장



### 1. 제정이유

- 예천군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촌의 진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군수 및 임업인의 책무(안 제3조)

- 군수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
- 임업인 등은 예천군 임업 및 산촌발전을 위해 노력

#### 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임업 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사업 지원
- 경영능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교육, 연수사업
-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실시 규정 명시

라.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정산에 필요한 준용규정 등(안 제6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임업 및 신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임업 및 신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추후반영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syyh2000@korea.kr](mailto:syyh2000@korea.kr)

## 예천군 임업육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를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립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4. “임업관련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를 말한다.
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6.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와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등 예천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업 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사업
3. 경영능력 향상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교육·연수사업
4. 임산물의 생산, 유통, 이용, 가공 및 보관사업
5.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립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8. 2.>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삼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옷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